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458 |
|----------|-----|

제출년월일 : 1997. 12. 1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보육 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로 규정함(안 제12조의2)
- 시설장의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이하의 기간내에서 연장할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 3)
-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무기간에 따라 종전에는 3일 내지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일 내지 23일까지로 함 (안 제14조 제1호)

3. 본문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취원"을 "입소"로 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제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시설장이 동일인일때의 시설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원장) : 61세
2. 기타종사자 : 58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 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근무상한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 부터 10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기간은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통산기간을 말한다.

제14조중 "종사원"을 "종사자"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 · 3월이상 6월미만 | 4 일 |
| · 6월이상 1년미만 | 7 일 |
| · 1년이상 2년미만 | 10 일 |
| · 2년이상 3년미만 | 13 일 |
| · 3년이상 4년미만 | 16 일 |
| · 4년이상 5년미만 | 19 일 |
| · 5년이상 6년미만 | 22 일 |
| · 6년이상 | 23 일 |

제15조중 "보육위원회"를 "고성군보육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원장"을 "시설장"으로 한다.

제18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제3호중 "평"을 "ㅁ"로 하고, 동서식 제7조 제5호중 "갑"을 "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근무기간이 10년이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 ~ 제4조 (<u>생략</u>)</p> <p>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u>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생략</u>) <<u>신설</u>></p> <p>2. ~ 4. (<u>생략</u>)</p> <p>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u>보건사회부장관</u>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7조(위탁운영) ① (<u>생략</u>) ②<u>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p> | <p>제1조 ~ 제4조 (<u>현행과 같음</u>)</p> <p>제5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p> <p>1. (<u>현행과 같음</u>)</p> <p>2. <u>모자복지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u></p> <p>3. ~5. (<u>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u>)</p> <p>제6조(보육료) <u>보건복지부장관</u></p> <p>제7조(위탁운영) ① (<u>현행과 같음</u>) ②<u>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수탁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u>원장</u>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p> <p><u><신설></u></p> <p>③ <u>(생략)</u></p> <p><u><신설></u></p> <p><u><신설></u></p> | <p>제12조(종사자 임면) ①..... <u>시설장</u></p> <p>.....</p> <p>.....</p> <p>②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u>시설장이 동일인일때의 시설장의 임면은</u> 군수가 한다.</p> <p>③ <u><현행 제2항과 같음></u></p> <p>제12조의2(근무상한연령) ①공립보육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관리를 위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종사자별 근무상한연령은 다음과 같다.</p> <p>1. <u>시설장(원장) : 61세</u></p> <p>2. <u>기타종사자 : 58세</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은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2조의3(근무상한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u>시설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근무상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u></p>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제14조(휴가) <u>종사원</u>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u>특별휴가</u>로 구분한다.</p> <p>1. (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속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 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 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 <tr><td>· 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 <tr><td>· 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 <tr><td>· 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 <tr><td>· 5년이상</td><td>20일</td></tr> </tbody> </table> <p>제15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u>보육위원회</u>가 이를 담당한다.</p> <p>제16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p> <p>1. <u>원장</u> — 군수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p> <p>2. (생략)</p> <p>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u>보육관계법령</u>, <u>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u>에 의한다.</p>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8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1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 20일 | <p>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u>근무상한 기간은 시설장으로서 근무한 통산기간을 말한다.</u></p> <p>제14조(휴가) <u>종사자</u>.....</p> <p>1.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속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 3월이상 6월미만</td><td>4일</td></tr> <tr><td>· 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 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 <tr><td>· 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 <tr><td>· 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 <tr><td>· 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 <tr><td>· 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 <tr><td>· 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p>제15조(징계위원회)</p> <p>..... <u>고성군보육위원회</u>.....</p> <p>.....</p> <p>제16조(징계권자)</p> <p>...</p> <p>1. <u>시설장</u> —(.....<u>시설장</u>.....)</p> <p>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준용규정)</p> <p>.....<u>보육사업지침</u>.....</p> <p>.....</p>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6년이상 | 23일 |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상 2년미만 | 8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이상 3년미만 | 1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이상 |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속기간 | 연가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이상 6월미만 | 4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월이상 1년미만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상 2년미만 |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년이상 3년미만 | 1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년이상 4년미만 | 16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년이상 5년미만 | 19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년이상 6년미만 | 2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년이상 | 23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